

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 : 자연경관지구) 변경결정(안)에 관한 의견청취 심사보고

2005. 5. 10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재무건설위원회

1. 審査經過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5년 5월 3일 · 종로구청장
나. 회부일자 : 2005년 5월 6일
다. 상정일자 : 제150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
제1차(2005. 5. 10) 재무건설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

(제안설명자 : 도시관리국장 김 명 식)

가. 제안이유

- 불합리한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해 달라는 민원검토 결과, 서울시에서 통보한 「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·용도지구 정비계획」의 자연경관지구 해제기준에 합당한 지역으로서 청운동 57-42외 14필지의 자연경관지구를 해제코자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 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위 치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7-42외 14필지
- 면 적 : 1,105㎡
- 도시계획사항 : 제1종일반주거지역/자연경관지구

다. 입안내용

-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:자연경관지구) 변경결정(안)

구분	지구명	위 치	면적(㎡)	최초결정일	비고
기정	인왕지구	종로구 청운동 57-42외 14필지	751,926	2000.12.5	
변경	인왕지구	종로구 청운동 57-42외 14필지	750,821	-	감 1,105

3. 質疑 및 答辯 要旨 : 생 략

4. 意見 採 擇 : 의 견 없 음

5. 其他 必要한 事項 : 없 음